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0156

발의연월일: 2025. 4. 28.

발 의 자:이학영·임호선·김영배

한정애 · 김교흥 · 안호영

김기표 • 이인영 • 강득구

김성환 · 김영호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에 대하여 재범예방에 필요한 교육의 수강명령 또는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고 있음.

하지만, 마약류를 소지, 운반, 관리, 매매, 수수 등 유통에 관여한 마약범죄의 경우에는 마약류의 폐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교육의 수강명령 등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마약범죄 근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마약류를 투약, 흡연, 섭취한 사람뿐만 아니라 소지, 운반, 관리, 매매 등 유통에 관여한 마약사범에 대해서도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2제1항).

법률 제 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2제1항 중 "흡연 또는 섭취한"을 "흡연, 섭취, 소지, 운반, 관리, 수수 또는 매매한"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마약사범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3조,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마약류를 소지, 운 반, 관리, 수수 또는 매매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40조의2(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 제40조의2(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
| 병과) ① 법원은 제3조, 제4조 | 병과) ① |
|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마약류 | |
| 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 | <u>흡연, 섭취, 소지, 운</u> |
| 람(이하 이 조에서 "마약류사 | 반, 관리, 수수 또는 매매한 |
| 범"이라 한다)에 대하여 형의 | |
|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1년 | |
|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 | |
| 할 수 있다. | |
| | , |
| ② ~ ⑨ (생 략) | ② ~ ⑨ (현행과 같음) |